KOSHA Guide

C - 14 - 2012

- (2) 작업중 안전조치 사항
 - (가) 작업 중에 산소농도의 지속적 측정으로 산소농도 결핍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- (나) 작업 중에 수시로 유해가스 상태를 점검하고 유해가스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는 추가 환기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 - (다) 작업 중에 정전 등에 의한 환기 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하여야 한다.
 - (라) 등받이 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상으로부터 2.5미터이상의 승강사다 리를 이용하여 승·하강 시에는 안전대 및 구명줄을 사용하여야 한다.
 - (마) 이동식비계 사용 시 안전보건규칙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 - (바) 밀폐공간 내 벽체, 천정 방수작업 시 작업발판,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은 안전보건규칙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 - (사) 손수레 등으로 자재를 소운반 할 때에는 무리한 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.
 - (아) 작업 전에 작업장의 자재를 정리·정돈하여 작업 중 자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- (자) 전기기계·기구 사용시 합선 및 과부하에 의한 전기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.
 - (차) 핸드그라인더, 조명등 전기기계·기구 사용시 누전차단기 및 접지가 되어 있는 분전반에서 인출하여야 한다.
 - (카) 가연성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폭형 전기기계·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.
 - (타)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